

인천광역시 시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 (강화군 2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4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등에 따라 시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및 지형도면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 19.

인천광역시장

1. 고시명 : 인천광역시 시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 (강화군 2건)

2. 고시내용

가. 대상유산 : 인천광역시 소재 시지정유산 3개소(허용기준 2건)

연번	고시	종목	유산명	구·군	상세주소
1	1	유형문화유산	강화 온수리 성공회 사제관	강화군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505-3
2		유형문화유산	강화 온수리 성공회 성당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505-11
3	2	기념물	황형 묘		강화군 강화읍 월곶리 산 72-1 외

나. 관련근거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
-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4조

다. 기준의 적용

- 본 허용기준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1호,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4조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시지정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절차에 따라 처리함.
-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시지정유산보존 영향검토를 생각하고, 기초자치단체(군·구)에서 자체 처리함.

라. 시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붙임]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 : 인천소식→고시공고→허용기준고시 참조

3. 기준시행일 : 시보 고시일

4. 문의처

연번	시·구·군	부서명	주 소	연락처
1	인천시	문화유산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 (구월동), 신관 9층	032-440-4032
2	강화군	국가유산과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지킴이센터 3층	032-930-3893

붙임 1. 시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2건) 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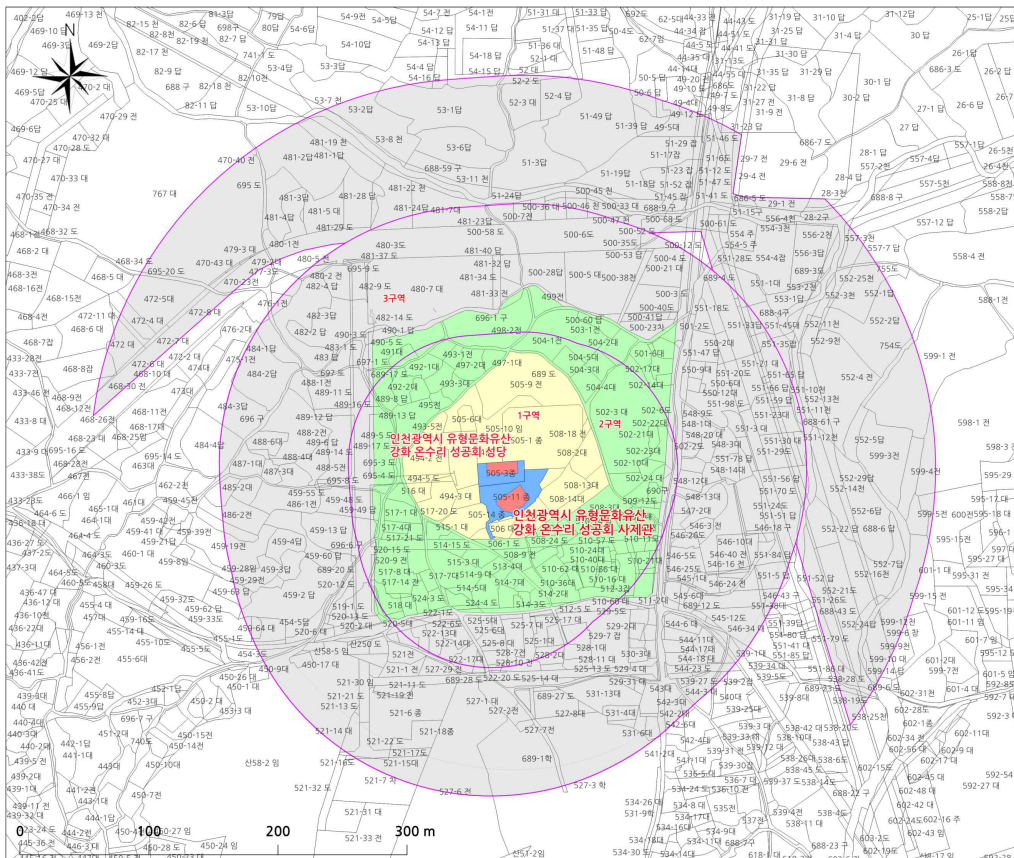
[붙임 1]

시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2건)

◇ 강화군

1) 유형문화유산 강화 온수리 성공회 사제관, 유형문화유산 강화 온수리 성공회 성당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2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 및 대수선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200m 이내에 한함)	
	◦ 높이 3m 이상의 땅깍기·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200m 이내에 한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200m 이내에 한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인천광역시장과 사전 협의함.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유산 강화 온수리 성공회 사제관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유산 강화 온수리 성공회 성당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505-11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505-3

범례

- 시지정유산
- 시지정유산 보호구역
- 100~300(m)
- 연속지적

구분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개별검토	개별검토
2구역	최고높이 8m 이하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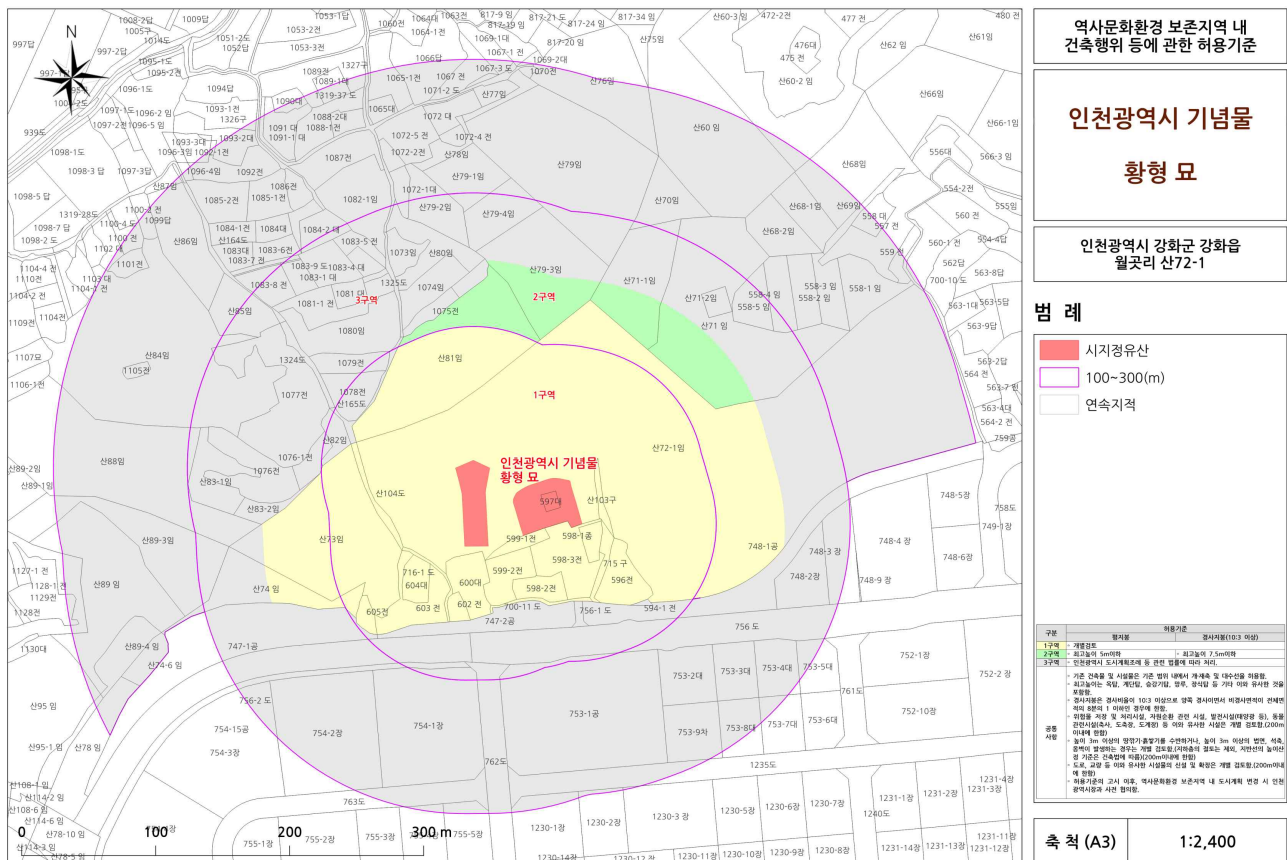
기타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 및 대수선을 허용함.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200m 이내에 한함)
높이 3m 이상의 땅깍기·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200m 이내에 한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200m 이내에 한함)

축척 (A3) 1:2,500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2) 기념물 황형 묘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 및 대수선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200m 이내에 한함) - 높이 3m 이상의 땅깁기·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200m 이내에 한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200m 이내에 한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인천광역시청과 사전 협의함.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